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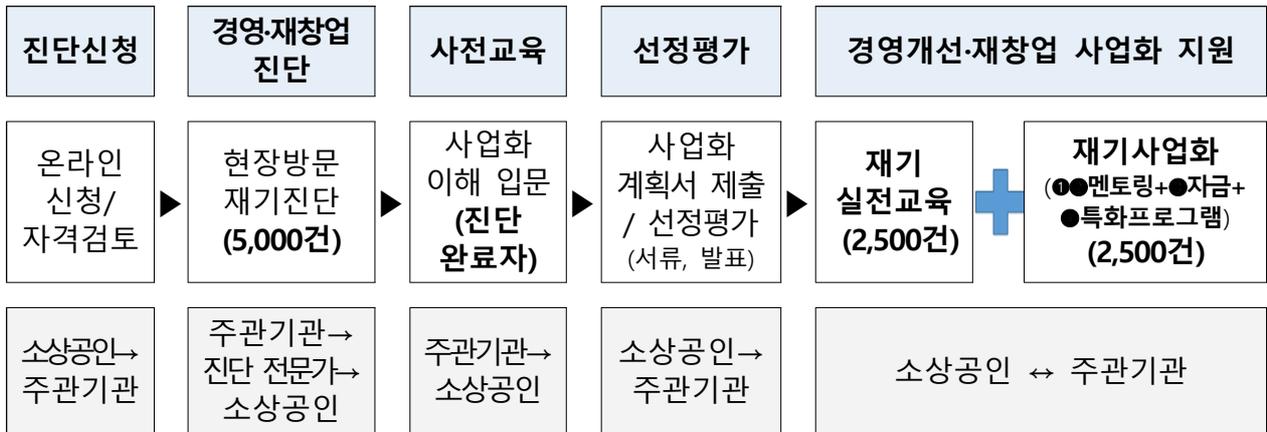
## 참고1 재기사업화 모집 개요

- **사업목적** :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 및 준비된 재창업 육성을 위해 전문가 진단 및 맞춤형 개선 전략,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
- **공고기간** : '26. 1. 23.(금) ~ '26. 2. 27.(금)
- **신청기간** : '26. 1. 30.(금), 10:00 ~ '26. 2. 27.(금), 17:00
- **지원대상** :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폐업(예정) 소상공인\*

### < 지원대상 세부요건 >

지원사업	지원조건	세부기준
경영개선 사업화	① 매출액	'25.1.1. 이전 개업자로서 - 전년대비 매출감소 10% 이상~50% 미만의 경영위기 소상공인 - 전년대비 매출감소 50% 이상의 경영위기 소상공인* * 경영진단(전담 PM)을 통해 참여기회 부여 여부 판단(20% 미만) - 매출확인 근거 :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- 매출감소 판단 : '24년도 대비 '25년도 매출 감소율 비교 ※ '24년 중 개업인 경우, 분기별 신고 매출액 환산 적용(11월, 12월 개업 시 일단위)
	② 위기지역	최근 3년 이내 해당 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,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[참고3]
	③ 소상공인 365경영 진단연계	위기징후 의심 소상공인 대상으로 소상공인 365 경영진단 결과 재기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소상공인
재창업 사업화	① 재창업 (폐업 후 신규)	폐업 후 공고 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
	② 업종전환	기존 영위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(업태변경 必)으로 재창업 예정인 소상공인
	③ 창업도약	공고일 기준 폐업 후 재창업일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은 소상공인 (기존 사업장 선 폐업 후 재창업)
	④ 새출발기금연계지원	가.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 이후 채무조정 정보(공공정보) 등록된 자로서 나. 폐업 후 공고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폐업 소상공인으로, 다. 협약 기간 내 재창업 완료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(협약일 이전 사업자등록 시, 자격상실로 협약취소 및 지원불가)
<b>&lt; 공통사항 &gt;</b>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소상공인 기준은 『소상공인기본법』 제2조에 따름</li> <li>▶ 사업자등록증명(또는 폐업사실증명원)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한 소상공인</li> <li>▶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제외 대상이 아닌 업종에 종사(단,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의 경우 재기 희망(예정) 업종 기준)</li> </ul>		

## □ 지원절차



□ **지원내용** : ①②밀착 멘토링 + ③경영개선·재창업 자금(최대 2천만원)  
+ ④기관별 특화프로그램 등을 종합 지원

□ **지원규모** : 재기진단·사전교육 5,000건, 실전교육·사업화 지원 2,500건

- 지원규모는 지역별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- '신청접수완료' 된 경우라도 자격요건 미충족 및 지역별 지원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경영진단 및 사전교육 대상자로 미선정 될 수 있음